

2023학년도 제4차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자 2023. 11. 01.			
이사정수	11명	재적이사	10명
감사정수	2명	재적감사	2명

1. 개최일시 : 2023년 11월 10일 오전 10시 30분
2. 개최장소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단국역사관 604호(회의실)
3. 임원 출결현황

구 분	인 원	성 명
참석인원	9명	이 사 김 무 일, 김 성 재, 김 정 배, 박 유 철, 방 장 식, 어 진 우, 이 동 건, 이 상 배, 장 호 성
	2명	감 사 김 영 덕, 이 원 창
불참인원	1명	이 사 박 호 군

4. 참석 직원 : 사무처장 차병권, 총무팀장 송명훈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이상희 이사의 임기 중 사망(2023.09.13.자)에 따라 재적이사가 11명에서 10명으로 변경됨을 설명하고, 재적이사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한다.

회 의 안 건

1. 단국대학교 교원 징계 의결 요구에 관한 건
2. 단국대학교 직제 조정에 관한 건
3.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차량운반구(업무용차량) 처분에 관한 건
4. 단국대학교 도서관 도서 처분에 관한 건
5. 의료원 직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건
6. 법인 정관 개정에 관한 건
7. 법인 정관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건
8. 법인 임원(이사, 감사) 선임에 관한 건



의 결 사 항

1. 단국대학교 교원 징계 의결 요구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교원 징계 의결 요구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대학교 교무처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강정원 대학교 교무처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교원 징계 의결 요구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9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1”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2. 단국대학교 직제 조정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직제 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대학교 기획실장 및 의료원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신은종 대학교 기획실장 및 조준성 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직제 조정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9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2”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3.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차량운반구(업무용차량) 처분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차량운반구(업무용차량) 처분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대학교 총무인사처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정중모 대학교 총무인사처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차량운반구(업무용차량) 처분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9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3”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4. 단국대학교 도서관 도서 처분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도서관 도서 처분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대학교 퇴계기념중앙도서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박 영 대학교 퇴계기념중앙도서관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도서관 도서 처분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9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4”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5. 의료원 직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의료원 직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김재일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의료원 직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9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5”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6. 법인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법인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법인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차병권 법인 사무처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법인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9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6”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7. 법인 정관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법인 정관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법인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차병권 법인 사무처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법인 정관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9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7”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8. 법인 임원(이사, 감사) 선임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법인 임원(이사, 감사) 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법인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차병권 법인 사무처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법인 임원인 김무일 이사 임기(2020.01.01.~2023.12.31.)가 만료되므로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 김무일 이사의 이석을 요청하다
- 김무일 이사 이석하다.
- 김정배 이사가 김무일 이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오랜기간 재직하였으며 풍부한 기업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본 법인 발전을 위하여 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신 분으로 중임을 제안하다.



- 이동건 이사가 김정배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참석이사 전원 김정배, 이동건 이사 의견에 동의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김무일 이사(임기 : 2024.01.01.~2027.12.31)의 중임이 가결됨을 선포하다.
- 김무일 이사 입실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법인 임원인 박유철 이사 임기(2020.01.01.~2023.12.31)가 만료되므로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 박유철 이사의 이석을 요청하다
- 박유철 이사 이석하다.
- 어진우 이사가 박유철 이사는 독립기념관장, 국가보훈처장, 광복회장 등을 역임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였고, 본 법인 이사로 재임하며 창학이념 구현과 법인 발전에 지속적으로 공헌하고 있으신 분으로 중임을 제안하다.
- 김성재 이사가 어진우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참석이사 전원 어진우, 김성재 이사 의견에 동의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박유철 이사(임기 : 2024.01.01.~2027.12.31.)의 중임이 가결됨을 선포하다.
- 박유철 이사 입실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법인 임원인 방장식 상임이사 임기(2020.01.01.~2023.12.31)가 만료되므로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 방장식 상임이사의 이석을 요청하다
- 방장식 상임이사 이석하다.
- 박유철 이사가 방장식 상임이사는 대학 및 법인 주요 행정부서 보직을 역임하였으며, 풍부한 교육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 상임이사로 재임하며 본 법인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므로 상임이사로 중임을 제안하고 보수 및 처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할 것을 추가로 제안하다.
- 김무일 이사가 박유철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참석이사 전원 박유철, 김무일 이사 의견에 동의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방장식 상임이사(임기 : 2024.01.01.~2027.12.31., 보수 : 현행과 동일)의 중임이 가결됨을 선포하다.
- 방장식 상임이사 입실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법인 임원인 이동건 이사 임기(2020.01.01.~2023.12.31)가 만료되므로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 이동건 이사의



이석을 요청하다.

○ 이동건 이사 이석하다.

○ 이상배 이사가 이동건 이사는 기업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본 법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헌하고 있으므로 중임을 제안하다.

○ 방장식 이사가 이상배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참석이사 전원 이상배, 방장식 이사 의견에 동의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동건 이사(임기: 2024.01.01.~2027.12.31)의 중임이 가결됨을 선포하다.

○ 이동건 이사 입실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법인 임원인 김정배 이사 임기(2020.02.25.~2024.02.24)가 만료되므로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 김정배 이사의 이석을 요청하다.

○ 김정배 이사 이석하다.

○ 이동건 이사가 김정배 이사는 고려대학교 총장,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학교법인 휘문위숙 이사장으로 재임 중으로 풍부한 교육 경험과 학교법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본 법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중임을 제안하다.

○ 어진우 이사가 이동건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참석이사 전원 이동건, 어진우 이사 의견에 동의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김정배 이사(임기: 2024.02.25.~2028.02.24)의 중임이 가결됨을 선포하다.

○ 김정배 이사 입실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법인 임원인 김영덕 감사 임기(2022.02.25.~2024.02.24)가 만료되므로 감사 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 김영덕 감사의 이석을 요청하다.

○ 김영덕 감사 이석하다.

○ 김성재 이사가 김영덕 감사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법인의 감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임을 제안하다.

○ 박유철 이사가 김성재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참석이사 전원 김성재, 박유철 이사 의견에 동의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김영덕 감사(임기: 2024.02.25.~2026.02.24)의 중임이 가결됨을 선포하다.

○ 김영덕 감사 입실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본 법인 개방이사인 박호군 이사(교육)(임기: 2020.01.01.~2023.12.31.)가 만료되므로 후임 이사 선임을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된 박호군 후보자와 이두식 후보자를 소개하고, 이사들의 의견과 심의를 당부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법인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각 후보자별 약력 소개를 당부하다.
- 차병권 법인 사무처장이 박호군 후보자는 과학기술부 장관, 인천대학교 총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하였음을 설명하다. 이두식 후보자는 법무부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등을 역임하고 변호사로 활동중임을 설명하다.
- 방장식 상임이사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별 이력을 살펴보니 박호군 후보자는 공직 및 교육 경험이, 이두식 후보자는 법조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함을 설명하다.
- 김무일 이사가 박호군 후보자의 공직 경력과 교육 경험, 현재 법인 이사로 재임하며 법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향후 법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으로 중임을 제안하다.
- 이상배 이사가 김무일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참석 이사 전원 김무일, 이상배 이사 의견에 동의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박호군 개방이사의 후임으로 박호군 후보자의 개방이사(교육)(임기: 2024.01.01.~2027.12.31.) 선임이 가결됨을 선포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본 법인 개방이사인 이상희 이사(교육)(임기: 2021.03.01.~2023.12.31.)의 사망(2023.09.13.자)에 따른 후임 이사 선임을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된 조인호, 조현익 후보자를 소개하고, 이사들의 의견과 심의를 당부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법인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각 후보자별 약력 소개를 당부하다.
- 차병권 법인 사무처장이 조인호 후보자는 대한치과보철학과 회장, 단국대학교 교수, 부총장 등을 역임하였음을 설명하다. 조현익 후보자는 단국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였음을 설명하다.
- 김성재 이사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별 이력을 살펴보니 두 후보자 모두 교육 경험이 풍부하다고 설명하다.
- 방장식 이사가 조인호 후보자는 교육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재임 중 치과대학 학장, 부총장 등을 역임한 대학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본 법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으로 개방이사 선임을 제안하다.
- 김정배 이사가 방장식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참석 이사 전원 방장식, 김정배 이사 의견에 동의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故이상희 개방이사 후임으로 조인호 후보자의 개방이사(교육)(임기: 2024.01.01 ~2027.12.31.) 선임이 가결됨을 선포하다.



※ 비공개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별첨1”, “별첨5”를 비공개하기로 출석이사 9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자 3인의 호선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제2항의 단서 조항을 근거로 출석임원 중 3인(김성재, 방장식, 김영덕)을 간서명자로 호선함.

폐 회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본 안건의 심의가 전부 끝났으므로 13시 0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의	장	이	사	장	장	호	성	장호성
		이		사	김	무	일	김무일
					김	성	재	김성재
					김	정	배	김정배
					박	유	철	박유철
					박	호	군	박호준
					방	장	식	방장식



		어	진	우	어	진	우
		이	동	건	이	동	건
		이	상	배	이	상	배
감	사	김	영	덕	김	영	덕
		이	원	창	이	원	창



<별첨 1>



<별첨 2>

의료원 직제 조정

1. 조정 내용

현행			조정			
병원장	충남지역암센터		<현행과 동일>			
	임상의학연구소장					
	부원장					
	QI실장	QI실 부실장				
	대외협력실장	<신설>	-	<현행과 동일>	대외협력실 진료협력부실장	진료협력팀
			대외협력실 부실장			대외협력팀
		진료협력팀			대외협력실 대외홍보부실장	홍보팀
		대외협력팀				홍보팀
		홍보팀	사회사업팀			
	교육수련실장	교육수련실 부실장(내과계)		<현행과 동일>		
		교육수련실 부실장(외과계)				
	감염관리실장	감염관리실 부실장				
	전산정보실장					
	사무처장					
	인체유래물은행장					
	권역외상센터장					

2. 조정 사유

- 대외협력실 업무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체계 수립을 위하여 진료 관련 부서(진료협력팀, 대외협력팀)를 관장하는 진료협력부실장과 대외홍보 관련 부서(홍보팀, 사회사업팀)를 관장하는 대외홍보부실장 직제를 신설하고자 함

3. 시행시기 : 2023.12.1.부터



<별첨 3>

단국대학교 차량운반구 처분

■ 차량운반구 처분 현황

구분	차종	점수	취득일자	취득금액(원)	매각예정금액	주행거리(km)
죽전캠퍼스	에쿠스 (05년0147)	1	2015.11.06.	103,040,460원	1,600,000원	274,276km

■ 처분사유 : 내용연수가 도과하였고 노후로 인한 차량유지비 증가 및 안전성 문제로 처분하고자 함

■ 처분계획 : 이사회 승인 후 비교 견적 상 최고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 또는 폐차 처리

<별첨 4>

단국대학교 도서관 도서 처분

■ 도서 처분 현황

(단위:원)

구분	점수(도서)	구입금액	감가상각액(누계)	잔존가액
퇴계기념중앙도서관	43,666	261,253,971	261,253,971	0
울곡기념도서관	33,536	239,202,632	239,202,632	0
합계	77,202	500,456,603	500,456,603	0

■ 처분사유 : 복본 자료(원본 소장), 파오손 자료, 이용가치 상실 자료(이용불가 형태자료), 이용자 분실 자료, 장서 분실 자료의 제적처리로 도서관 장서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유형고정자산 폐기 및 매각 처리를 통하여 자산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처분하고자 함

■ 처분계획 : 폐기 및 매각처리



<별첨 5>

<별첨 6>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개정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요점
제75조의5 (의료원) ① <생략> ② 의료원에는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원장을 두며 교수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료원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의료원에는 의료원장 직속 기구로 기획조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 의과대학 부속병원에는 병원장, 부원장을 두고 병원장은 교수로 보하며, 의	제75조의5 (의료원)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④ 의과대학 부속병원에는 병원장, 부원장을 둔다.	■ 병원장 보직 직급 범위 조정



현 행	개 정	개정요점
료원장의 명을 받아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의료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병원장을 보좌하고, 병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진료부서, 충남 지역암센터, QI실, 대외협력실, 교육수련실, 감염관리실, 전산정보실, 사무처, 의생명연구원, 간호부 등을 두며, 각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실, 센터, 과, 팀을 둔다. 충남지역암센터장은 교수로, QI실장, 교육수련실장, 감염관리실장, 전산정보실장, 의생명연구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대외협력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의 직원으로, 사무처장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간호부장은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충남지역암센터장, QI실장, 감염관리실장, 대외협력실장, 교육수련실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센터장 및 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충남지역암센터 부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QI실, 감염관리실, 교육수련실의 부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대외협력실 부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1. 병원장은 교수로 보하고,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의료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병원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2. 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병원장을 보좌하며, 병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진료부서, 충남 지역암센터, QI실, 대외협력실, 교육수련실, 감염관리실, 전산정보실, 사무처, 의생명연구원, 간호부 등을 두며, 각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실, 센터, 과, 팀을 둔다. 1. 충남지역암센터장은 교수로 보하고, 센터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2. QI실장, 감염관리실장, 전산정보실장, 의생명연구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QI실장과 감염관리실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3. 대외협력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의 직원으로 보하고, 실장을 보좌하기 위해 진료협력부실장과 대외홍보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진료협력부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대외홍보부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4. 교육수련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실장을 보좌하기 위해 내과계와 외과계로 구분하여 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병원장 및 부원장의 보직 직급범위, 직무를 각각의 호로 분리 ■ 의과대학 부속병원 산하 센터 및 실을 각각의 호로 분리하여 보직 직급범위 명시 ■ 대외협력실 진료협력부실장 및 대외홍보부실장 직제 신설 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개정요점
⑥ ~ ⑦ <생략> 제82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의 직급별 정원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5. 사무처장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간호부장은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⑥ ~ ⑦ <현행과 동일> 제82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의 직급별 정원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 11. 1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의료원 직종별 정원 일부 조정

[별표 1] 법인과 대학교 사무직원의 직종별 정원

직 종	법인	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병원	치과대학 죽전병원	치과대학 세종치과 병원	의료원		
						현 행	개 정	
일반직	<생략>					1,536	1545	▲9
기술직						197	197	
원무직						-	-	-
기능직						137	133	▼4
별정직						9	4	▼5
계						1,879	1,879	-



법인 정관 시행세칙 개정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요점
제11조(정원) 정관 제82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11조(정원) 정관 제82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부칙 <2023. 11. 10.>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의료원 직급별 정원 일부 조정

[별표 1] 법인과 대학교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

직종	직급	법인	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병원	치과대학 치과병원	치과대학 치과병원	의료원		
							현행	개정	
일반직	계	<생략>					1,536	1,545	▲9
	2급(참여)						1	1	
	3급(부참여)						4	4	
	4급(참사)						26	26	
	5급(부참사)						196	196	
	6급(주사)						374	372	▼2
	7급(부주사)						113	110	▼3
	8급(서기)						822	836	▲14
	9급(부서기)						0	0	
	기술직						계	<생략>	
2급									
3급		0	0						
4급		17	17						
5급		50	50						
6급		60	60						
7급		16	16						
8급		54	54						
9급		0	0						
원무직		계	<생략>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계		137	133	▼4
	6급		46	46	
	7급		50	50	
	8급		7	3	▼4
	9급		6	6	
	10급		28	28	
별정직	계		9	4	▼5
	4급(참사대우)				
	5급(부참사대우)				
	6급(주사대우)				
	7급(부주사대우)		0	0	
	8급(서기대우)		5	3	▼2
	9급		1	0	▼1
	10급		3	1	▼2
총 계			1,879	1,879	

